#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1 1 민 사 부

# 판 결

사 건 2014가합38499 손해배상(기)

원 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25.

#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5.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801,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1) 이 사건 소장 부본

<sup>1)</sup> 원고의 2015.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쪽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2014. 7. 25.부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지위 및 화물보관계약 체결

- 1) 원고는 물류대행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한국미쓰비시' 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국미쓰비시의 화물의 운송업무 전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미쓰비시의 화물 운송업무를 담당하여 왔다.<sup>2)</sup>
- 3) 원고는 2007. 9. 20.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별도의 해약통지가 없는 경우 2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한국미쓰비시의 화물에 대한 보관 및 작업<sup>3)</sup>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의 지위 및 창고 사용 현황

1) 피고는 물류대행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2. 7. 1. 별지 창고평면도 기재 및 표시 각 창고(이하 '이 사건 보세창고'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B로부터 창

터"라고 기재된 부분은, 같은 변경신청서 5쪽의 결론 중 "이에 대한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3년 7월 25일부터"라고 기재된 부분에 비추어 볼 때. "2013. 7. 25.부터"의 오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sup>2) 2007</sup>년경에는 대한통운국제물류 주식회사가 위 계약의 일방 당사자였으나, 대한통운국제물류 주식회사는 2008. 9.경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대한통운 주식회사는 2012년경 그 상호를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원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시기 구분 없이 '원고'라고만 한다.

<sup>3)</sup> 이 사건 보관계약상 '보관'이라 함은, B의 창고에 원고의 지시로 입고된 한국미쓰비시의 화물에 대하여 보세창고 업자로서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함을 말하며, '작업'이라 함은 화물의 분류작업과 컨테이너 적출/입, 입고하자, 출고상차 작업을 말한다[이 사건 보관계약서 제1조(갑 제2호증)].

고 4개동[별지 창고평면도 ① 내지 ③번, ⑫번 기재 각 창고(이하 '별지 창고평면도'는 생략하고, '○번 창고'라고만 한다)] 760평과 야적장 1,450평을 전차하여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는 2013. 2. 5. B와 사이에 기존 전대차 부분 외에 추가로 ④ 내지 ⑦번 각창고 760평과 야적장(야드) 440평 등 총 1,200평을 2013. 3. 1.자로 양수하고(그 법적성격은 B의 위 각 창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사용권 양수 내지 위 각 창고의 전대차라고할 것이다), 2013. 11. 30.자로 B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갑) : B

양수인(을): 피고

양도인(이하 편의상 "갑"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 중구 C 소재 B의 사업에 관한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이하 편의상 "을"이라 한다)가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사업 양수도계약(이하 "본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 게 양도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수도대상)

을은 갑의 사업을 양수하는 대상은 양도인의 사업인가증, 기존 거래처, 전화번호, 상호합의된 자산, 부채로 자산인수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한다.

- 1. <u>갑이 사용 중인 #4/#5/#7번 창고(760평) 및 야드(440평) 총 1,200평은 2013. 3. 1.부로</u> 을에게 양도하고, **2013. 11. 30.부로** 갑의 사업권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여야<sup>4)</sup> 한다.
- 2. 창고(야드 포함), 영업권,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각종 공구, 철발판, 사무실 집기 비품 등 현재 갑이 창고 내외에서 사용 중인(임대 제외) 자산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파레트는 별도 협의).

- 3. 을이 인수하게 될 창고는 특허보세구역 특허장 인가지역으로 "을"로 이전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약 특허장 인가가 안 될시 특허장 인가가 될 때까지 갑의 인가증으로을의 사업이 인수 이후에도 계속 영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다음 갱신시(2013. 11. 30.)에는 을로 변경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4. 기존 직원은 "을"이 개별면담 후 2013. 12. 1.부로 신규 채용하고, 근무조건 및 급여는 "을"의 기준에 따르며, 2013. 11. 30. 이전의 미지급된 임금(급여/퇴직금)은 "갑"이 책임진다.

#### 제3조(양도가액 및 임대료)

"을"은 "갑"의 사업을 양수하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키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후 익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이미 지급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갈음한다. 또한 창고 추가사용료로 월 임대료는 1,40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2013. 3. 1. ~ 2013. 11. 30.까지로 한다.

#### 제4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사업의 양수를 받는 과정뿐만 아니라 양수받은 후에라도 을이 원활하 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동안 일체의 협조를 하여야 하고, 본 계약이 상당기간 존속되도록 기존 거래처 및 경인기계와 임대기간이 존속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제6조(사업양도 효력)

본 계약에 따른 사업양도의 효력은 2013. 3. 1.부터 발생한다.

2013. 2. 5.

3)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13. 3. 1.부터 ④ 내지 ⑦번 기재 각 창고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다. 한국미쓰비시의 원고에 대한 화물 보관 등 의뢰

원고는 2013. 7.경 소외 한국미쓰비시로부터, 한국미쓰비시가 수입하는 에스컬레이터 부품들(총 78개 컨테이너 분량이다. 이하 '이 사건 전체화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세

<sup>4)</sup> 밑줄은 편의상 덧붙인다. 이하 같다.

창고에의 입고, 보관 및 출하를 의뢰받았다.

#### 라.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전체화물 보관 의뢰 및 B의 보관

- 1) 원고는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라 B에게, 2013. 7. 19. 위 화물들 중 44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 한다)의, 2013. 7. 21. 나머지 34개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제2화물'이라 한다)의 각 보관을 의뢰하였다.
- 2) B의 이사로서 한국미쓰비시의 화물에 관한 창고업무 영업을 전담하던 소외 D은 2013. 7. 19.부터 2013. 7. 25.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고되던 이 사건 전체화물의 각 컨테이너들을 B의 창고에 보관하거나 야적장에 적재하기 시작하였으나, B의 창고 및 야적장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화물을 적재하기 부족하자, 이 사건 제1화물 중 10개의 컨테이너에서 꺼낸 화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1-1화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화물 중 4개의 컨테이너에서 꺼낸 화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2-1화물'이라 한다)를 피고가 사용 중이던 ⑤번 내지 ⑦번 창고 앞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적재하였다.

# 마. 화재사고 발생 및 화물 소훼

그런데 2013. 7. 25. ①번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② 내지 ⑦번 창고까지 번져 ② 내지 ⑦번 각 창고가 모두 전소되었으며, 이 사건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1-1, 2-1화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이 소훼되었다.

# 바. 적하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및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이 사건 화재 후 이 사건 전체화물에 대한 적하보험회사인 소외 피아이씨씨 프 로퍼티 앤드 캐주얼티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소외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한국미쓰비 시에게, 2014. 7. 16. 이 사건 1-1화물의 소훼로 인한 적하보험금으로 미화 227,176달러를, 2014. 7. 21. 이 사건 2-1화물의 소훼로 인한 적하보험금으로 미화 18,332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2) 소외 보험회사는 한국미쓰비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소훼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444호로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 및 피고는 각자 251,476,86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소외 보험회사, 원고 및 피고가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 결정사항

- 1.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소외 보험회사)에 게 2014. 12. 15.까지 <u>176,000,000원</u>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 및 피고)은,
  - 가. 인천 중구 C 소재 B보세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이 사건 전체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176,000,000원을 넘지 않음을 확인하고,
  - 나. 위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 및 피고) 사이의 구상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499호 사건(위 사건이 취하될 경우 등에는 별소로 제기되는 구상금청구소송)에서 별도로 가리기로 한다.
- 3.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는 이에 동의한다.

-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3) 원고는 2014. 12. 12. 위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소외 보험회사에게 위 1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 11,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은 2013. 3. 1. 부터 발효되었으므로, B의 영업을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3. 7. 25. 경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화물들을 안전하게 보관 및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한국미쓰비시의 화물들이 소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화물 소훼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피고가 2013. 3. 1.자로 B의 영업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3. 1.자로 B의 창고영업을 양수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2조 제1호는, ④ 내지 ⑦번 각 창고(760평) 및 야드

- (440평) 총 1,200평은 2013. 3. 1.부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사업권 일체는 2013. 11. 30.부로 양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②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6조에는 "본 계약에 따른 사업양도의 효력은 2013. 3. 1.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는 위 각 창고의 사용권 이전(내지 전대차)계약과 사업권 양수양도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각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면, 위 제6조는 위 각 창고의 사용권 이전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2013. 3. 1.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2013. 3. 1.로 정한 것이고, 개별 계약의 이행시기는 위①항 기재와 같이 각 계약별로 정한 것을 따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③ 피고와 B는 2013. 9. 1.경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사업양도양수의 효력 발생시기를 2013. 9. 1.로 앞당기는 의미에서 B의 이 사건 보세창고에 관한 사업권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을 제1호증의 4), 만약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사업양도양수의 효력이 2013. 3. 1.부로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와 B 사이에 위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④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2조 제4호에서는 "기존 직원은 피고가 개별면담 후 2013. 12. 1.부로 신규 채용하고, 근무조건 및 급여는 피고의 기준에 따르며, 2013. 11. 30. 이전의 미지급된 임금(급여/퇴직금)은 B가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사업권을 2013. 3. 1.부로 양수하였으면서 인적설비는 2013. 11. 30. 이후 양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⑤ 2007. 9.경부터 2013. 7.경까지 B에서 근무하면서 한국미쓰비시의 화물 보관 영업을 전담하여 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D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및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7호증의 1)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신은 2007. 9.경 B에 입사할 때 한국미쓰비시를 비롯하여 수 건의 영업건을 가지고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한국미쓰비시는 화물의 운송업무 전반에 대하여 원고와 계약을 맺었고, 자신은 한국미쓰비시와 원고의 승인 하에 한국미쓰비시의 창고업무 영업을 처리하여 왔다. 자신이 B에 들어오면서 한국미쓰비시의 운송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보관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때부터 B가한국미쓰비시 화물의 창고보관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 © 자신은 2013. 3. 1. 이후에도 여전히 B에서 근무하였고, 2013. 7.경에도 피고와 B는 각각 독립적으로 창고영업을 하고 있었다.
- ⓒ B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전체화물이 인천항에 들어오기 10일 전쯤 한국미쓰비시 측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화물 78개 컨테이너의 입항 통지와 창고 입고통지를 받았다. 그 후 2013. 7. 19.부터 이 사건 전체화물이 B의 창고로 입고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체화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2013. 7. 19. B의 E 사장이 자신을 불러서 월급 감액 애기를 하였고, 이로 인한 다툼으로 인하여 B에서 사직하기로 해 퇴직서를 쓰고 이직을 계획하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전체화물이 B 창고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B에 들어오고 있는 이 사건 전체화물을 곧바로 다른 회사 창고로 옮길 수없어서 자신이 다른 회사로 옮길 때까지는 B의 창고에서 보관하기로 B의 E 사장과 얘기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피고의 F 사장을 찾아가 이직 얘기를 한 후 한국미쓰비시와원고의 동의를 얻어 한국미쓰비시의 영업건을 가지고 2013. 8. 1.자로 피고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다.
  - ② 자신은, 피고가 그 무렵 B의 창고 중 일부(① 내지 ③, ⑫번 각 창고)를 전차하

여 사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가 B의 창고 중 어느 창고와 야적장을 더 전차하여 사용하기로 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B의 창고 정문쪽 야적장에는 다른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어서 B의 창고 후문쪽 야적장에도 이 사건 전체화물 중 일부를 적재하려다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야적장에 적재하게 된것이다.

① 자신이 2013. 8. 1.자로 피고로 이직하게 되면서, 자신과 원고의 G, B의 E 사장, 피고의 F 사장과 협의하여 정산의 편의상 이 사건 제1화물(44개짜리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관료 및 작업료를 청구하고, 이 사건 제2화물(34개짜리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B가 원고에게 보관료 및 작업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B와 피고가 각각 원고에게 보관료 및 작업료를 청구하였다.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3. 3. 1.자로 B로부터 창고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공작물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판단

## 1)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보관계약상의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공작물인 창고를 점유, 사용하는 자인데, 공작물인 한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①번 창고에 불이 나서 한국미쓰비시의 화물에까지 연소되어 화물들이 소훼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2) 관련 법리

- 가)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수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 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반을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관결 참조).
- 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소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 3) 손배배상책임의 발생

### 가) 이 사건 화물의 소훼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당시 ① 내지 ⑦번, ⑫번 각 창고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①번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되어 이 사건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던 이사건 화물이 소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8, 9,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각 창고는 벽, 기둥 등 구조부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단순히 포장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철제 프레임만으로 지지되고 전체가 방수포로 덮인 형태로 이루어진 천막창고들이어서 화재 발생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였던 사실, ② 위 각 창고 내에는 화재경보기만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 시설이나 소화기 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창고의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하거나 창고 내부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화물이 소훼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 1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소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한국미쓰비시의 수출예정 화물 소훼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미쓰비시의 보관 및 출하업무 위탁에 따라 2013. 7. 19. 피고가

B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아 영업을 하고 있던 창고에,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수출될 예정이던 한국미쓰비시의 엘리베이터 부품을 보관시켰다. 위 수출화물은 2013. 8. 30.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선박에 선적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위 수출화물 중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미쓰비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소훼된 위 화물을 다시 제작, 포장, 운반하는데 합계 25,325,034원을 지출한 후, 2015. 3. 17. 원고에게 보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 25,325,034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미쓰비시에 대한 물류비 채권과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결국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25,325,03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수출화물을 보관한 창고의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당시 ① 내지 ⑦번, ⑫번 각 창고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①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수출화물이 피고의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수출화물 중 일부가 소훼되었다거나, 그 소훼로 인한 피해액이 25,325,034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부분 화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피고가 B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아 영업을 하고 있던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이고, 이 부분 화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② 이 부분 화물의 소훼 사실, 소훼의 정도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관련 보고서, 현장사진 등)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 ③ 갑 제13호증[수출화물 피해내역(재제작)]은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다.
- ④ 갑 제15호증(상계통지 메일)은 한국미쓰비시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피고의 방어권을 고려할 때, 한국미쓰비시가 작성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부분 화물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피해액이 25,325,034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4) 손해배상액의 산정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이 훼손되어 원고가 한국미쓰비시에게 운송 및 보관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화물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가, 소외 보험회사가 한국미쓰비시와의 적하보험계약에 따라이 사건 화물 소훼로 인한 한국미쓰비시의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한국미쓰비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소훼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에게 251,476,861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나) 판단

소외 보험회사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화물 소훼와 관련하여 한국미 쓰비시에게 251,476,861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소외 보험회사는 한국미쓰비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소훼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선행소 송에서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위 251,476,861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원고가 소외 보험회사에게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 이 내려졌고 원고와 소외 보험회사가 이의하지 않아 위 강제조정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강제조정결정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체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1억 7,600만 원을 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사실, 원고는 2014. 12. 12. 위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소외 보험회사에게 1억 7,600만 원을 지급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화물 훼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원고가 실제 지출한 위 1억 7,600만 원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5) 손해배상액의 경감

가) 이 사건 화물은 ①번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연소(延燒)한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개정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화물은 원고가 B에게 그 보관업무를 위탁한 화물로서, 피고의 관여 없이 이 사건 야적장에 무단 적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화물이 보관되어 있던 위치, 보관일수, 화물의 양을고려할 때, 이 사건 화물은 B 사장 E과 피고 대표자 사이의 사전 합의 하에 보관되었거나, 피고가 묵시적으로나마 보관행위를 양해한 것이므로 무단 적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물 적재시 피고와 사전 협의한 바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 D의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의 보관일수, 화물의 양, 보관위치만으로는 원고의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화물이 이사건 야적장에 무단 적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화물 소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보세창고가 천막창고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체화물의 보관 등을 B에게 의뢰한 점, ⑤ 피고도 이 사건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화재의 원인과 그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위 금액의 30%로 경감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2,800,000원(= 176,000,000원 × 0.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3.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영

판사 정순열

# 판사 이호연

# 창고평면도

